

“인권 존중한 정당한 판결”...여성계·시민단체 등 대체로 환영

현재 위헌 결정 각계 반응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놓자 사회 각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먼저 여성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속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진보성향의 여성단체들은 기존부터 간통죄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기본적으로 간통죄가 가정이나 여성 보호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현재의 간통죄 폐지 결정 직후 곧바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단체의 양이현경 정책실장은 “개인의 관계를 형법에 근거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다 범죄와 비교하면 기소율도 낮아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양이 실장은 그러나 민법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피해 배우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현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시도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징벌적 효과는 적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법적 제도가 필요한 여성들이 있다는 논리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박승희 사무총장은 “당연히 현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는 위자료나 양육비가 형편없이 적은 상황이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인권을 존중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간통죄 자체가 구시대의 산물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 사문화돼 폐지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봤다. 특히 개인의 성관계는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가 풀어야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간통죄 폐지로 가정 보호나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가치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구정우 성공판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립하는

“실효성 없는 구시대 산물 폐지 당연...민법적 후속 보완 대책 필요”

“성도덕 유지·이혼 등 사회적 해악 방지 기능 무너져” 일부 우려도

두 가지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가정보호 중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 크게 고려했다”며 “보수주의 이념의 맥락에서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간통죄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간통죄는 1905년 4월 20일 대한제국 법률 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서부터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송재홍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간통죄는 그동안 가부장적인 문화의 전통 속에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나 상처를 받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가부장적 문화권 속에서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에 부정적 입장인 최병록 서원대 법학과 교수는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부부간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와 함께 간통으로 인한 배우자·가족 유지,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을 사전에 막는 기능을 해왔다”며 “이런 긍정적 기능에도 폐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간통죄는 부부 사이 계약의 파기 문제”라며 “상호 신뢰가 깨진 것을 국가가 형벌로 제재하는 것보다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간통죄 폐지에 어느 정도의 혼란이 예상돼 상대적으로 남성의 위도가 많은 사회 현실을 반영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허성우 성공회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 남성의 외도율이 높은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성을 물을 것인가 하는 민법적 조치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위헌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가 대체로 우세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연합뉴스

1905.4.20	대한제국 법률 3호로 형법대전 공포.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한 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함
1912.4.1	일본 옛 형법 183조 그대로 적용한 제령 11호 조선형법 시행. 간통한 부인과 상간자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함
1953.6.5	간통한 남녀를 모두 처벌하도록 한 형법안 국회 상정. 110명 중 57명 찬성으로 통과. 2년 이하의 징역 법정형은 유지
1989.3.14	대법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해 합헌으로 판단
1990.6.30	부산지법,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1990.9.10	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한병태·이시우·김광균 전 재판관, 위헌 의견 제시
1993.3.11	1기 헌재, 1990년 헌판 유지채 합헌 결정. 결정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2001.10.25	3기 헌재, 재판관 6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 원상 전 재판관, 위헌 의견 제시
2008.10.30	4기 헌재,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 민중대·이동홍·홍영호 전 재판관은 위헌 의견. 권희숙 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각 제시
2010.3.18	반부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정책위원회, 간통죄 폐지 의견 제시
2011.8.8	의정부지법,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2015.2.26	5기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 박한철·이진성·김창중·서기석·조용호·김이수·김일민 재판관 위헌 의견 제시

유림측 “개탄 금할 수 없다”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데 대해 그동안 간통죄 존치를 주장해 온 유림(儒林)측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유감을 표하면서 “간통죄가 폐지됐더라도 사립다운 도리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림 단체인 성균관은 정한호 직무대행 명의로 “성균관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입장 이전에 간통이라는 행위가 과연 법이 있으면 지키고 없으면 어기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사립다운 도리인가를 먼저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균관은 “이제 법만 피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던 시대에서 피할 법이 없는 ‘인륜의 강상(綱常·유교문화에서 사람이 늘 지키고 행하여야 할 덕목) 도리’를 한시도 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정병로 부회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라 하더라도 사적 영역의 문제가 선량한 관습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위헌 결정에 반대했다.

한편 전주교대 주교회의 측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교회의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인 전일 신부는 “지난해 겔럽과 연구소의 공동 조사에서 천주교 신자 중에서는 84%, 비신자 중에서도 83.8%가 간통을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라고 소개했다.

전 신부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는 아직도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여전히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약자라는 점을 봤을 때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간통죄 위헌 현재 재판관별 판단

위헌	폐지	위헌의견2	위헌의견3	유지
박한철(소장)	이진성, 김창중, 서기석, 조용호, 김이수, 김일민	이정미	민창호	이정미, 민창호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제한. 혼인과 가정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예정에 맡겨야	상식 상식외로 부당하지 않는 간통 행위. 미혼 남녀의 혼인 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것은 위헌	법적 규제 필요성 인정. 그러나 간통 행위 자체는 위헌적이지 않음. 위헌적이지 않은 것은 위헌	간통죄 폐지시 혼인과 가족 공동체 해체 촉진. 가정 내 어린 자녀를 안락하게 해 주리	간통죄 폐지시 혼인과 가족 공동체 해체 촉진. 가정 내 어린 자녀를 안락하게 해 주리

자료: 헌법재판소

“가족 공동체 유지·보호에 파괴적 영향”

여성·보수 재판관 2명 반대 의견

간통죄 폐지에 반대한 헌법재판관은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53·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과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창호(58·14기) 재판관 등 2명에 그쳤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가족 공동체가 폐지될 것을 우려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 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 결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형법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정형의 상한(징역 2년) 자체가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간통 행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고, 부부의 이혼으로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고 2000~2006년 재판상 이혼 원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4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추천됐다. 박한철 현재소장을 빼면 가장 선임이다. 고려대를 졸업했고 5기에서 유일한 여성이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검찰 공안통 출신이다.

2008년 10월 31일 이후 기소자 공소 취소

구금됐다면 일당 산정 형사보상 받을 수도

사법처리자 구제 어떻게

과거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됐다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최대 3000여명 정도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작년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 그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4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간통죄에 대한 가장 최근의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 선고됐다. 따라서 2008년 10월 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 기간 기소된 경우 공소가 취소된다. 구금됐다면 일당을 산정해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2008년 10월 31일 이후 형

이 확정됐더라도 그 이전에 간통 행위를 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을 제시했다. ‘범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법 1조 1항에 따른 주장이다.

반면 헌법재판소법을 조문대로 해석할 때 간통 행위 시는 재심 청구 자격과 무관하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법 47조 3항이 최근 개정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제 재심 청구에 따른 법원 판례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이다. 또 2008년 10월 3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이미 공소가 기각된 사람은 2070명이다.

따라서 약 3400명은 2008년 10월 31일 이후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이 확정됐다. 간통 행위 시를 기준으로 재심 청구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설에 따르면 최대 3000여명 정도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합뉴스

최무룡-김지미서 정윤희·황수정까지 ‘충격’

옥소리 폐지 선봉...탁재훈·김주하 희비 갈려

세상 뒤흔든 스타들의 간통 사건

26일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면서 그간 간통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예계 인물들에 세상 관심이 가고 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연예계에서도 적지 않은 스타들이 간통죄에 걸려들었다.

배우 최무룡-김지미 커플은 남녀 톱스타가 간통혐의로 고소당한 사례로 큰 파장을 낳았다. 1962년 10월22일 배우 최무룡(당시 34세)의 부인 이지 역시 배우인 강효실(당시 31세)이 배우 김지미(당시 24세)를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최무룡-김지미는 일주일간 유치장에서 살았다. 김지미는 당시 엄청난 위자료를 강효실에게 물려줬고, 이후 최무룡과 1969년까지 부부도 살았다.

1970년대 은막의 스타 정윤희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당시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만나다 조 회장의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해 구속됐다. 그러나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고, 1984년 조 회장과 결혼했다. 2002년에는 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황수정이 간통 혐의로 추가기소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2000년에는 탤런트 강남길이가 부인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며, 2003년에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임창용이, 2005년에는 탤런트 김예본이 각각 간통혐의로 고소당했다. 탤런트 옥소리는 간통죄 폐지의 선봉에 섰다.

최근에는 방송인 탁재훈의 아내가 세 명의 여성에 대해 타사와 외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MBC 전 앵커인 김주하는 남편 강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NAMBU UNIVERSITY



남부대국제수영장 3월 완공 예정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7월 3 ~ 14일 수영경기가

남부대국제수영장에서 열립니다.